

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제84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2. 27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3. 9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3. 19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2003. 9월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도입됨에 따라, 조례상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,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세분화 및 확대함으로써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2조 및 별표1)
-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방법 등을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포상금의 지급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주민의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의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(안 제7조 및 제11조)
-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%를 감액하여 줌(안 제8조제3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조례의

전면 개정건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,

- 2003. 9월 환경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점포면적 33㎡이상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시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사용시에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용되는지?
- 답 : 음식점 배달시에는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적용대상이 아니며, 음식점 내에서만 사용시 적용됩니다.
- 문 : 조례 제8조3항 및 제15조1항7호 규정 등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 50% 감면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등 집행부의 재량 행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?
- 답 :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과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에 대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3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